

[붙임 1]

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(산림보호법 시행령[별표1])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**1년 이상** 실무에 종사한 사람
3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에 따른 **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**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**3년 이상** 실무에 종사한 사람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술사, 조경기술사, 산림기사·산업기사, 조경기사·산업기사, 식물보호기사·산업기사 자격
 - 나.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자격
 - 다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(식물보호 분야) 자격
5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**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**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**3년 이상** 실무에 종사한 사람
6. **수목치료기술자**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**3년 이상** 실무에 종사한 사람
7.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**5년 이상** 실무에 종사한 사람

<비고>

1. "수목진료 관련 학과"란 조경과, 농업과,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·처방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.
2. "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"란 나무병원,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·처방·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.

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(산림보호법)

제21조의5(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20. 3. 24.>
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이 법, 「농약관리법」 또는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